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배경과 내용

김 동 원
〈상공자원부 석유정책과장〉

1. 머리말

상공자원부는 현행 석유사업기금제도가 내년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석유사업법령상의 기금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석유사업법령에 의한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석유사업법령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미비점들을 보완토록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화) 입법예고 하였다.

2. 입법예고의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기금 관련조항의 정비

-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정부의 석유비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석유사업기금은 석유가격 완충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은 물론 그 동안 에너지 및 자원의 전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 징수와 사용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으므로 정부는 이를 재정으로 흡수시킴으로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결정하고 '94. 3. 24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석유사업

기금을 규정하고 있던 「석유사업법」의 관련조항도 같은 날자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석유사업법」만 개정이 완료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못한 실정인바, 금번에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개정토록 추진중인 주요 조항을 보면
 - (1) 에너지특별회계법령이 규정됨에 따라 조항이 삭제되는 사항은
 - 기금사무의 위탁 및 관리운용(령 제12조의 2)
 -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령 제12조의 3)
 - 기금의 용도(령 제16조)
 - 기금의 회계(령 제16조의 2)
 - 석유사업기금 계정의 설치(령 제16조의 3)
 - 기금결산보고(령 제18조)등이며
 - (2)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은
 - 회계의 징수금 용어를 「수입금」에서 「부과금」으로 변경(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3)
 - 정부석유비축시설 용어를 「정부보유석유비축시설」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보유 석유비축시설」로 변경(령 제11조의 4, 제13조)
 - 징수금 납부기관을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점 포함)」으로 변경(령

제15조) 하는 것 등이다.

(3) 기타 보완되는 사항으로는

- 부과금 체납시 가산금부과 규정 신설(령 제14조 제7항)
 - 세입징수관 임명 근거 규정 신설(령 제15조 제5항)
 - 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관리 규정 신설(령 제15조의4)
 - 시·도지사의 과징금 부과시 세입징수관에 통보절차 신설(령 제25조 제6항)
 - 부과금 납부·유예·제외에 관한 절차 및 서식 신설 등이다.
- (규칙 제11조의4,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7호의2 서식)

나. 석유사업기금(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제도 정비

- 현재 석유사업기금은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원유 및 LNG 포함)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 원료인 납사, 운할유(기유 포함), 아스팔트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중에서도 LNG 및 발전용 저유황 B-C유 등은 기금부과에 따른 물가영향 등을 우려하여 현재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석유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시 석유사업기금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징수제외대상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즉 현재 징수제외 대상유류중 운할유, 운할기유, LNG 및 발전용 저유황 B-C유는 원칙적으로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되, 다만 LNG 및 발전용 B-C유는 석유사업기금 부과시 곧바로 도시가스요금 및 전력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어 물가불안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금부과액을 0으로 유지코자 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방침이래 금번 법령개정시에는 징수제외 대상을 위와 같이 조정하는 동시에(령 제13조)

- 징수제외대상의 축소에 따라 국내생산시 부과금의 환급대상도 축소(령 제15조의3)
- 정부비축 석유제품의 임차시 부과금 부과시점 명기(령 제14조 제2항)
- 수입시 뿐만 아니라 판매시에도 부과금의 징수가 가능토록 보완(령 제13조, 령 제14조 제2항)
- 판매시 부과금의 부과시점을 판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완화(령 제15조 제2항).
- 부과금 징수시 석유의 용도에 따라 차등징수가 가능토록 보완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 한 것이다.(령 제14조 제5항)

다. 기업활동규제완화와 관련된 조항 정비

-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기업활동에 관련되는 제반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중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것이 이번 입법예고 내용중의 중요한 부분이다.
- 우선 납사의 경우 공업용원료라는 측면을 감안 현재 석유사업기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납사를 대체하여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예 : LPG등)의 경우에는 우선 기금을 납부한 후 동물량이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확인을 한 후 사후에 이를 환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법령개정시에는 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화학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은 일단 기금징수를 유예하였다가 나중에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물량이 있다면 이에 대해 기금을 징수코자 하는 것이다.(령 제15조의2)
- 이외에,
 - 수도권 석유일대리점의 허가기준 중 저장

시설기준을 1,500kl 이상에서 1,000kl 이상으로 완화(령 별표1)

- 아스팔트를 석유수출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화(규칙 제7조 제1항)
- 석유정제업자의 중복된 수출입계획신고 의무를 면제(규칙 제7조 제4항)
- 나프타를 석유수출입계약승인 대상에서 제외(규칙 제11조 제2항)
- 천연가스 수입계약 중 1년 미만의 계약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규칙 제11조 제2항) 하는 것도 기업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 기타 미비사항의 정비

- 이밖에 최근 정유업계의 휘발유 옥탄가 올리기 경쟁을 감안하여 현재 단일로 되어 있는 휘발유의 품질규격을 외국과 같이 이원화하여 보통휘발유(옥탄가 91~95) 및 고급휘발유(옥탄가 96이상)으로 구분하되 주유소에서 반드시 보통휘발유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휘발유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규칙 별표 2, 규칙 제8조 제2항)
- 또한 승용차는 적절한 타이어 압력을 유지할 경우 3% 이상의 유류절약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타이어 공기주입 시설을 주유소에 보유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시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것도 주요 내용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 그밖에,
 - 석유판매업 승계시 승계신고절차 명기(령 제25조, 제2항, 규칙 제8조 제7항)
 - 시·도지사의 석유판매대리점 판매구역 확장 협의를 위한 지침시달 근거마련(령 제25조 제2항)
 - 정량미달 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

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보완(령 별표2)

- 석유판매업의 허가 신청 및 신고시 경영자의 신원증명서 제출의무 조항 삭제(규칙 제8조,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2 서식)
- 석유판매업 신고시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명기(규칙 제8조 제4항, 별지 제13호의 3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 이동판매소의 신고절차 명기(규칙 제8조 제5항)
- 석유판매업자의 공급계약서 변경시 변경내용을 제출토록 명기(규칙 제8조 제8항)
- 석유수출입 승인시 수수료 징수조항 삭제(규칙 제11조 제4항 내지 제5항)
-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처분대상자의 형평에 맞도록 조정(규칙 별표1)
- 법령 위반시 과태료부과 기준을 부과대상자의 형평에 맞도록 조정(규칙 별표4)
- 석유수출입업 신고서식 신고서식 보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시·도지사의 석유판매업소 관리현황 정기보고서식을 보완(규칙 별지 제28호서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추진계획

정부는 이러한 석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금년말까지는 확정시킴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상과 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상공자원부(전화 503-9626)에 연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